

4月10日부터 PCT總會

—國際調查機關등 마무리—

1月 24일에 發効한 特許協力條約(PCT)의 第1回 締約國總會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美 蘇 등 加盟 12個國과 오스트리아 日本 등 加盟豫定 12個國 및 유럽特許廳(EPO) 등 政府 3個機關, 其他 AIPPI 등 民間機關이 업서비로 參加하여 6월 1일부터 受理業務를 開始함에 따른 國際出願受理官廳, 國際調查機關, 國際豫備審查機關등을 選定하였다.

현재 PCT에의 가맹국은 美, 蘇, 西獨, 스위스, 英, 佛, 럭셈부르크, 브라질, 콩고, 카메룬, 中央阿차드, 가봉,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세네갈, 토고, 스웨덴 등 18개국이다.

한편 日本도 PCT加盟批准案이 지난 3월 31일 衆議院을 通過하였으므로 7월 1일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事務局長을 통하여批准書를 寄託하고 10월 1일부터는 國제출원의 수리업무를 취급한다고 日本特許廳長이 PCT총회에서 宣言하였다. 아울러 國內特許法도 改正하기로 方針을 세워 衆議院에서 審議中이다.

이번 PCT총회에서는 6월 1일부터 수리업무를 개시하는 결정을 비롯해서 國제조사기관(ISA)과 國제예비심사기관(IPEA)을 選定하였다.

ISA에는 가맹국중에서는 美, 蘇, 스웨덴, EPO와批准書未寄託國中에서는 오스트리아와 日本을 指定함으로써 5個國, 1機關이 되었고 IPEA에는 英, 蘇, 스웨덴, EPO와 오스트리아 및 日本을 지정하여 역시 5개국, 1기관이 되었다.

한편 日本은 이번 PCT총회를 契機로 國內改正特許法을 6月中에 公布施行토록 措處하는 동시에 WIPO와 공동으로 國내세미나를 開催할豫定이다. 뿐만아니라 올해를 「特許國際化元年」이란 깃발을 내걸고 7年後인 1985년에는 特許施行 100周年紀念行事까지 大大的으로 舉行한 準備를 하고 있다.

日·中共商標保護協定發効

—異質的制度에 低意가 아리송—

日本과 中共이 맺은 商標保護協定이 지난 3月 1일

부터 發効하였다. 이로써 中共은 日本을 包含해서 世界 24個國과 상표협정을 맺었으나 중공은 상표협정의 根據가 되는 商標條例 以外에 特許등 餘他 工業所有權制度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같은 근거에 따른 日·中共商標協定의 内容은 한마디로 自由陣營에서는 보도 듣도 못하는 그것이며 그 바탕은 最惠國民待遇로 궁색을 免하려하고 있다.

同協定問題는 彼此가 순수한 工業所有權協定의 意圖보다도 商品市場確保와 技術交流에 底意가 있다 하겠다. 당초 이 문제が 提起된 것은 1974年頃의 일이며 日本特許廳擔當者들이 中共을 訪問하여 協定締結에 대한 原則의in 매듭을 짓고 이어서 이른바 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와 中共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形式上인 窓口가 되어 推進하였다.

그때의 狀況은 日本有名企業들이 中共商標를 몇대로 日本特許廳에 出願하여 登錄하게 되는가하면 日本輸入商社는 中共商標權을 取得하여 競爭商社를 排除하려고 企圖하는 등 난장판이었다. 日本國內에서의 事件으로서는 「英雄」이란 萬年筆商標이며 이 商品의 상표가 中共으로서는 代表의in 製造品인데 이상표가 日本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들간의 문제인지라 상표의 取消로써 落着은 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이를 契機로 中共의 對日輸出主宗商品에 대한 상표 등은 日本國際貿易促協이 代理出願하여 權利를 취득해두는 따위의 該定措處도 取하였다.

한편 中共에 대하여는 日本의 著名商標에 대해서는同一 또는 類似商標가 第3國에서 출원등록을 拒絕토록 要求하여 이에 適用된 상표가 300件이 된다는 소문이다. 中共의 상표관리조례에는 협정이 發効한 相對國의 상표출원은 협정발효후 6個月까지 他人의 先出願이 있어도 優先登錄을 認定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中共이 萬國工業所有權保護協約國이 아니기 때문에 피차에 內國民待遇라는 用語를 使用치 못하고 相互最惠國民待遇라는 條件으로 歸結되었다.

中共의 상표관리조례는 상표에 상품의 管理機能까지 주어져있다. 그 第1條를 보면 상표의 관리를 強化하고 企業의 製品에 대한 品質을 保障 向上시키기 위하여 本條를 制定한다고 그 目的을 明示하고 있다.

이른바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標章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政府(中央工商行政管理局)가 언제든지 품질의 粗惡이란 名分으로 取消할 수 있는 것이 自由陣營國家의 商標制度와 다른 點이다.

中共에서는 상품을 國家機關이 제조하고 국가기관이 販賣하고 있으므로 粗惡商品에 대하여 出處를 追窮한 후에는 상품의 취소는 물론 責任者까지도 處罰하게끔 法制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外國企業에 대해서 內國民待遇만 있을수 없으며 最惠國民待遇라는 용색한 이름으로 외국기업이 保有하는 상표를 別途管理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품질관리의 義務도 없다.

또한 外國企業의 中共에의 登錄出願條件은 自國에 등록되었거나 출원이 끝나야하는데 그 口實인즉 상표부로써 의한 등록을 막고 真正한使用者의 출원을 保護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中共內出願節次는 商標登録申請書, 國籍證明書, 商標見本, 委任狀을 갖추어야하며 출원은 中共國際貿易促進委를 통해서 中央工商行政管理局에 提出한다. 위임장은 中共國際貿促委에 위임하기 위한 書式이다. 또 日本을 除外한 協定國의 출원에는 出願證明書나 登錄證明書를 添付하게 되어 있다.

中共商標制度도 形式上으로는 先出願制度이다. 그러나 自由出願 또는 등록이 끝나야 출원을 받게끔 되어 있으므로 제3국에서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蒙起될 수 있다.

3월 1일에 발표한 日·中共間의 협정내용과 中共이 맺은 協定國들은 다음과 같다.

1. 日·中共商標保護에 관한 協定文

日本政府 및 中共政府는 1972년 9月29일에 北京에서 發表된 兩國政府의 共同聲明의 精神에 따라 商標의 保護로써 兩國間의 貿易關係를 一層 發展시킬 것을 希望하여 友好的인 協議를 거쳐 다음과 같이 協定했다.

第1條 어느 한쪽의 締約國法人(外國貿易機構包含) 및 自然人도 다른쪽의 締約國領域내에서 商標權其他商標登録에 관한 權利를 享有하는데 관하여 어찌한 第3國의法人(外國貿易機構包含) 및 自然人에 賦與하는 待遇보다도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賦與한다.

第2條 ① 이 協定은 그 効力의 發生을 위하여 國內法上必要한 項次가 서로의 國家에서 完了된 것을 確認하는 事實의 通告가 交換된 날부터 30일째의 날

에 効力이 發生한다. 이 協定은 3年間 効力이 있으며 그후는 그의 規定이 定하는 바에 따라 終了할 때까지 効力이 存續한다. ② 어느 한 쪽의 締約國도 3個月前에 다른쪽의 締約國에 대하여 文書에 의한 豫告로써 最初 3年的 期間이 滿了할 때 또는 그후 인체라도 이 協定을 終了시킬 수가 있다.

1977年 9月29日 北京에서 다같이 正文인 日本語 및 中國語에 의해 本書 2通을 作成하였다.

日本政府를 위해 佐藤正二

中共政府를 위해 李強

2. 中共의 對外商標保護協定國

英國, 스위스, 스웨덴, 네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벨지움,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뉴질랜드, 西獨, 이란, 泰國,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슬로바키아, 荷ガ리, 東獨, 日本(以上 24個國)

抗生素의 特許侵害訴訟提起

—英비침, 日 5個製藥社相對呈—

英비침·글트프會社는 지난 3月28일에 日本의 科研化學과 第三製藥등 5個企業을 相對로 抗生物質인 아모키실린原末의 輸入및 販賣의 中止訴訟과 假處分申請을 東京地法에 提起하겠다고 發表하였다.

그후의 進行은 確認되지 않고 있으나 비침社는 三共에 대하여도 같은 理由로서 이미 지난 15일에 提訴하였다. 비침은 1976年에도 비슷한 趣旨로 東京地法에 日本부리스톨·라보타토리즈를 상대하여 가치분신청을 제기하여 爭爭中에 있다.

이같은 特許權侵害訴訟의 內容인즉 아모키실린은 비침이 開發한 항생물질이며 페니실린을 原料로 한 半合成페니실린이란 것이다. 日本에도 비침이 100%出資한 傍系會社인 비침藥品이 있으며 日本비침을 비롯하여 藤澤藥品, 協和發酵, 武田藥品, 明治製藥등 5個企業이 아모키실린原末을 美스쿠이부社등에서 수입하여 1975년부터 經口劑로 製劑 販賣하고 있다.

아모키실린은 殺菌作用이 빠르며 大腸菌이나 인플루엔자菌, 肺炎球菌, 포도球菌등에 의한 廣範圍한 細菌感染症에 有効한 特徵이 있으며 日本市場에서 만도 年間 400億圓이 販賣되는 大型商品이다.

비침은 아모키실린의 特許를 에워싸고 美부리스톨과 世界各國에서 爭奪中에 있고 英國에서는 작년 11월에 勝訴한 바있다.